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br>번 호 | 18832 |
|------------|-------|

발의연월일 : 2019. 2. 26.

발의자 : 박완주 · 장정숙 · 정인화

윤영일 · 송갑석 · 박지원

신창현 · 백혜련 · 서영교

김현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임.

이에 시·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4항 및 제6항).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을 승인받으려면”을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